

제주한라대학교 교원윤리규정

제1장 대학에 대한 윤리

제 1 조(교원의 사명) 제주한라대학교 교원으로서 대학의 설립 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고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충실하여야 한다.

제 2 조(교원의 기본적 의무) ① 교원은 교육, 연구 및 학생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은 법인 정관 및 대학의 학칙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교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.

제 3 조(대학의 명예와 이익 존중) ① 교원은 개인의 기본권과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은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대학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.

③ 교원은 대학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, 개인적인 용도로 대학 자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4 조(지위남용 금지) 교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5 조(상호존중과 차별 금지) ① 교원은 동료교원,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은 대학 구성원에 대해 국적, 성별, 종교,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(성희롱 금지) 교원은 동료교원,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되며, 타인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.

제 7 조(겸직 금지)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타 기관에 상근 또는 비상근 직을 겸할 수 없다.

제 8 조(협력 의무) ① 교원은 입시업무 등 학사행정 업무를 비롯하여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은 동료교원 및 행정직원을 존중하며 상호협력에 최선을 대하여야 한다.

제2장 학생지도와 강의에 관한 윤리

제 9 조(강의내용 및 공정한 학사관리 의무) ①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.

②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.

③ 교원은 성적평가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, 자신의 강의평가 결과에 유리하도록 학생에게 개인적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 10 조(학생지도 및 평가) ① 교원은 학생이 기본교양과 전문능력,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은 학사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교원은 학사지도 등을 위하여 학생면담에 정기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 11 조(교육자로서의 모범) 교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스승으로서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품위 있는 행동을 취한다.

제 12 조(학생의 인격존중) ① 교원은 교육 및 연구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을 지원한다.

② 교원은 권위적인 자세로 학생을 대하지 아니하며 학생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.

제3장 연구자로서의 윤리

제 13 조(연구자로서의 의무) 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은 타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
제 14 조(연구사업의 신고와 공개) ① 교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으로 외부 위탁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교원은 대학의 자산을 이용하여 취득한 특허나 발명 또는 발견을 공개하여야 하며, 그 소유권의 귀속은 관계법령 및 대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제 15 조(연구비 관리) 교원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피연구자의 권리보호의무) 교원은 연구 사업을 수행할 때 피연구자의 권리와

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17 조(연구업적 평가) 교원은 타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.

제 18 조(연구업적 보고자로서의 의무) 교원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보고할 때 제반 규정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교원윤리위원회) ① 총장은 교원의 윤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윤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교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20 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